

인종주의와 한국사회의 법문화:

“다문화사회”의 법의식*

김현희**

1. 들어가는 글

2000년대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단일민족’으로 상상되어 왔던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인종적 구성의 변화는 많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함께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수용해야 할 여러 인종집단들의 공존의 양상과 방향을 법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연구자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한 단면을 제공해주는 인터넷 담론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한국인의 법의식의 양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현 한국사회의 법문화가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종적 인식 및 태도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인터넷 상의 여러 의사표현들로부터 떠오르는 일반인의 법의식(legal consci-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130].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ousness)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법의식 연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문화주의와 그를 둘러싼 여러 담론들로 구성된다. 한국사회가 이른바 오랫동안 문화적 이데올로기였던 ‘단일민족사회’로부터 다문화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은 변하는지 또 그 변화의 양상과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탐색한다. 한국사회의 다인종화, 다문화사회화는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종주의의 문제가 없다”는 암묵적 인종주의¹⁾로부터 한국사회의 ‘인종문제’가 가시화되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한경구·한건수 2007: 90-92; 한민 2011: 324; 하상복 2012: 542-543). 연구자는 현재의 인종구성의 변화와 인종주의의 확산에 관련된 인터넷 상의 반응으로부터 한국사회의 법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추론해 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과 조직에 따라 법의식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나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인권에 대한 담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법의식을 유추해 본다.

“짱깨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다문화 인정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선정적인 표제를 달고 있는 2012년 10월 13일자 노컷뉴스²⁾의 기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신고 있다.³⁾ 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

1) 인종과 민족은 완전히 서로 다른 범주가 아니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작용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순혈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단일민족일 뿐만 아니라 단일인종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층은 인종범주를 앞세우기 보다는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회 내의 기존의 인종주의에 대한 관심을 희석·무화시켜왔다(한경구·한건수 2007 참조). 현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는 근대화 과정에서 내재화된 백인중심의 인종 서열, 배타적 민족주의, 사회계층적 위계 등이 서로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설동훈 2009: 69-72).

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3) “짱깨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다문화 인정하지 않는 한국,” 2012. 10. 13. 윤철원

중 중학생 나이대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생 나이대의 10명 중 7명 비율로 인종차별과 적절한 교육환경의 부재 등을 이유로 학교를 포기하고 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실패했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며, 또한 인종차별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으며 서구 선진국에서도 인종차별은 존재한다고 항변하며 한국에서만 인종이 다른 이주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전반적인 논조는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다문화사회의 실현에 대해 부정적이다. 댓글로만 본다면 기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다문화’는 이미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으나, 한국사회와 대중들은 이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댓글들이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할까? 사실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인종적 배제주의의 측면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황정미 2007: 25). 그러나 다문화사회 관련 기사들에 대한 온라인 반응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는 인종주의적 언행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다문화”를 외치는 조직적인 움직임조차 관찰할 수 있다(강진구 2012; 한건수 2012; 김휘택 2013 참조). 강진구(2012)는 인터넷 단체들이 주장하는 반다문화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이른바 반다문화단체들의 반다문화 담론은 인터넷 상의 자신들의 폐쇄적인 사이트에 그 영향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카페와 블로그들을 통해 확산되며, 그 부분적 내용들은 기사와 게시글

기자.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13093912016> 마지막 검색일 2014. 6. 24. 총 1746개 댓글의 대부분은 외국인 혐오와 다문화주의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반대하는 댓글은 총 86페이지 중 하나도 없는 페이지도 많았고 한 페이지에 한두 개가 있을까 말까 하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다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4)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바로보기 실천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단일민족 코리아” 의 네 개 단체이다.

에 대한 댓글들의 형태로 표출되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들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견해를 수용하여 인터넷 상의 다양한 의사표현을 접근하고자 한다. 이른바 ‘악플’의 조직적 복제를 경계하면서, 인터넷 상의 담론에서 인종주의, 다문화사회, 그리고 일반인들의 ‘법’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관찰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념과 태도를 조사하는 본 연구에서 담론적 재현(discursive representations)이란 개념이 유용하다. 실재(reality)는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재현들(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로 구성되어 있다(Lee 1998: 45). 실용적 재현(practical representations)이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표현 이외의 방법으로 (실재를) 재현”하는 방식인데 비해, 담론적 재현이란 “행위자들이 언어적 또는 종종 이론적 표현을 통해 재현”하는 방식을 이른다. 신문기사, 인터넷 게시물과 그에 대한 댓글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이 언어/담론을 통해 실재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실재가 다양한 해석과 재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론적 재현도 실재의 한 구성부분이다(Lee 1998: 45). 본 연구는 인터넷 상의 담론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적 재현의 하나로 접근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인터넷 담론을 통해 어떤 양상으로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일반인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념과 태도로부터 어떤 법의식이 나타날 것인가를 조사한다. 다문화사회의 시대에서 한국인들의 법의식의 내용과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법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법의식과 다문화 수용태도

1) 선행연구

법문화는 특정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작용하는지 연구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룬다(Nelken 2004: 25). 이런 점에서 법문화는 단지 명문의 법규범만이 아니라 법규범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실천, 담론, 규정,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소 느슨한 법 개념과 여러모로 상통하는 면이 많다(Hirsch and Lazarus-Black 1994: 5; Silbey 2001: 8625). 법문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들이 갈등하고 있으나(Silbey 2010 참조), 법문화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입법운동 또는 법제도 자체를 구성·변경하는데 그 배경으로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의식이란 법문화를 맥락으로 하여 일정 정도의 특정한 지향점을 가지고 나타나는 의식이다. 법과 사회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법의식은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 양상이나 가치관”에 주목하고 있다(김현철 2006: 43). 김신영과 신동준(2006: 8)은 “행위결정의 기준으로서 법규범과 제도에 대한 인식,” “법규범이나 제도에 대한 일정한 [...] 가치판단” 그리고 “법에 대한 호감 내지 비호감 등과 같은 법감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넓은 의미의 법의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법의식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법의식인 법규범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법적 가치판단, 법에 대한 호불호 같은 감정들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의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법의식은 법규범 여부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문화적 실천(cultural practice)”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Ewick and Silbey 1998: 28, 45).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법의식은 “개인들이 법을 이해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양

상”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현희 2013: 215; Merry 1990: 5).

상기 학자들의 법의식 개념을 공유하면서, 코완(Cowan 2004: 929)은 법의식 연구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대개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법규범을 배우거나 법제도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관련된 여러 사건과 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한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을 경험하고 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법의식 연구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주체적 경험(subjective experiences of law)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의미가 있다(Cowan 2004: 929). 법의식이라는 개념은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 양상이나 가치관”에 연구의 중점을 둬으로써 사회구조로서의 법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되는 개인의 실천적 면을 법문화의 맥락에서 밝힐 수 있다. 법의식은 개인들이 법적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들의 해석과 가치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Silbey 2005; 이재협 2010 참조). 한편, 엥겔(Engel 1998: 141)은 “법은 그 효과를 여과시키고, 의미와 규칙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들이 서로 통합되는 사회적 장(social fields)을 통해서 중재된다”고 기술한다. 법이 사회적 장을 통해 중재된다는 사실은 법을 해석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여러 사회적 체계들이 그 해석, 경험, 실천의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많은 행위자들과 의미체계들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다. 법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인종, 계급, 성별 및 이주 경험 등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법의식이 분화되고 복잡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Merry 1990; Sarat 1990; Yngvesson 1993; Matsuda 1995; Nielson 2000; Coutin 2003; Menjivar 2006). 선행연

구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의 다인종화, 다문화화 현상은 인종, 민족, 계급, 국적, 법적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법의식의 재정립, 분열,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사회의 법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인이 근대적인 법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상정하고 그 원인을 조화와 화평을 중요시하는 공동체 문화에서 찾는 연구들과 이에 비판적인 연구들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함병춘은 1960년대의 법의식 조사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가치가 일제강점기에 서구로부터 도입된 근대적인 법제도와 간극을 이루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기반하여 왜 한국인이 소송을 기피하는지를 분석했다(황승흠 2010: 64). 공동체적 가치가 한국인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함병춘이 사회경제적인 요소들과 제도적인 측면의 영향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한다(Yang 1989: 895; Lee 1998: 58). 나아가 이철우(Lee 1998: 60)는 한국인의 공동체지향적인 태도 자체가 허구이거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화자들의 영향을 받아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강조하는 “역 오리엔탈리즘(reverse-Orientalism)”의 발로라고 해석한다. 황승흠(2010)은 한국의 법의식 조사의 연구를 검토하는 논문에서 1990년대 이후 다원적이고 복잡해진 한국인의 법의식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한국사회의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내포하는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사회조직원리 및 가치체계는 폐쇄성을 함의하는 단일민족이라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첨예하게 대립된다(황정미 2007,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이선미 2011 참조). 이른바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한국인의 법의식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 해석되었을 때 다문화주의적 가치의 유입에 따른 한국인의 전통적인 법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한편 한국인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법의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한국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경험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인종화는 한국사회 자체에 대한 재고를 요하는 현상으로서 법의식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다문화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문화들의 공존을 도모한다는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기실은 사회 구조의 불평등 특히 인종적 위계질서를 문제삼지 않도록 회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Žižek 1997: 44; Mathew 2005: 182; Goh 2008: 233; 하상복 2012: 547). 한국에서도 초기의 다문화 담론들은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를 따르면서, 다양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범주로서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종적 이질성이 가져오는 인종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윤인진 2008: 77-78 참조).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종화과정의 진행을 고려한다면, 다문화사회는 사실상 다인종사회를 의미하고, 다문화주의는 다인종사회에서 인종갈등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김혜순(2008: 40)은 “다문화사회란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종과 민족에 따른 새로운 차별적인 질서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원숙연 2008; 한민 2011). 특히 원숙연(2008: 41-42)은 국가 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제도적인 면에서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분석하면서, 동화와 분리라는 상반된 정책이 각각 다른 집단에게 적용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는 동화 정책이 적용되는 반면 남성 이주노동자와 화교에게는 분리 정책이 적용되는 등 상이한 집단에 대해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다른 “차별적인 포섭과 배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통계분석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연구들은 한국인들이 이주

자들에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시민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시민권의 내용을 사회권(복지권), 가족동행(가족결합)권, 정치권(투표권), 문화권으로 세분했을 때, 이 중 이주자의 가족동행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높았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이선미 2011: 26, 37). 또한 전반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저항은 낮으나, 이주민 특히 범죄자 송환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한다(황정미 2007: 26). 즉 이주민과의 공존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항이 낮으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민권의 각각이 파편적으로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권의 내용이 시민권의 각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모순적으로 보이게 한다. 결국 다문화주의의 수용문제는 수량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복잡한 태도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일괄적, 일면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 결과는 인터넷 담론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다문화”나 이주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시민권의 내용에 따라 한국인들이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양상이 불균등함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담론 상의 ‘외국인 범죄인화’에 따른 법의식의 발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주자 유입에 따라 조성되는 외국인 주거지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수립과 집행을 바라게 된다는 점으로, “범죄, 주거지환경 악화” 등에 의한 사회심리학적 위협을 크게 느끼게 됨에 따라 외국인 범죄를 처벌하는 법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윤인진·송영호 2011: 181). 또한 이주자에 대한 엄격한 ‘준법의식’의 요구의 맥락도 제시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대한 강화와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송환해야 된다는 단호한 태도

등에서 이주자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인의 준법의식이 이주민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주자가 ‘경계적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헤이먼과 스마트(Heymann and Smart 1999: 11)에 따르면 이주자/이민자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불법 또는 합법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성과 합법성의 경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위험인물이다. 한국인이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법집행을 엄격히 하길 바라는 것은 사회질서의 근간인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런 한국인의 바람은 인터넷 담론에서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한국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담론으로 쉽게 이어진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담론의 수집과 분석에 근거한다. 연구자는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를 둘러싼 인터넷 담론의 양상을 구성하는 온라인 기사(연합뉴스 및 주요 언론사 기사와 인터넷 언론사 기사 포함), 개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포털 다음(www.daum.net)에서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인종차별, 사이버 인종주의,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신부 등의 검색어로 검색한 다양한 기사 및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의 수집과 분석 단계를 거쳐, 법질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표로서 떠오른 ‘외국인 범죄’와 ‘인권’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기사, 게시글, 댓글 등의 자료 수집으로 좁혀 진행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과 태도가 한국사회의 법질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대한 특정 담론을 어떻게 ‘외국인 범죄’라는 이슈와 연관시켜 구성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먼저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등의 상기 여러 키워드들로 검색한 언론사 기사들과 댓글들을 수집하였으며, 그 중 사회적 관심⁵⁾이 높게 나타난 신문기사와 그 댓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 조회수가 높은 게시판⁶⁾을 채택하였다. 최신순의 검색방식을 이용한 결과,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대부분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2014년 자료들로 보강하였다. 또한 보조적으로 위의 검색어를 통해 연관되어 나타난 카페글과 블로그를 추적해 다문화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고 있는지도 관찰하였다. 카페글과 블로그들은 게시자들이 개인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신문기사 또는 TV 뉴스의 내용을 옮겨와 그 기사/방송내용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매개체들이다. 이런 여러 종류의 온라인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물론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개개인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대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문화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다문화주의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비교해볼 때, 부정적인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즉 악플이 훨씬 많았다). 외국인 혐오글을 비판하거나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인 의견들은 간혹 눈에 띄지만 거의 예외없이 다수의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은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편향된 의견으로 뭉쳐진 댓글들을 분석해보는 것은, 그 논리의 타당성과 사실적인 근거의 여부

-
- 5) 댓글과 뉴스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연계시킨 연구를 수용하여, 연구자는 댓글의 존재 여부 또는 그 숫자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박창호 2013 참조). 모바일 다음 포털은 뉴스를 순위에 따라 분류하는 몇 가지 범주에 “네티즌이 많이 본 뉴스”와 함께 “댓글 많은 뉴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연구자의 오랜 관찰의 결과는 이 두 가지 범주의 상위권 뉴스들의 목록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중첩됨을 보여준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때, 댓글수는 의미있는 분류의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 6) 현재까지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조사하였다.

를 떠나서, 이 댓글의 주인들이 왜 다문화사회에 부정적인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사회의 단면을 투시해볼 수 있다. 이른바 “반다문화” 인터넷 단체도 자료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나, 자료분석에 있어서 ‘일반인’의 의견이 조직적인 반다문화 담론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들 부정적인 댓글들도 한국사회의 일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성격상 댓글들로부터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댓글을 통한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않고 ‘조회’만 하는 일반인들에게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댓글들은 ‘추천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담론의 지형을 짐작하게 해준다. 물론 특정 댓글에 대해 의도적으로 추천수를 높이는 개인/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사표시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개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강진구 2012; 한건수 2012)는 댓글분석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3. 인종주의와 인권

1) 사이버 인종주의의 양상

이 절에서는 인종차별의 예, 외국인 범죄 문제, 다문화가정의 문제

에 관련해서 인터넷 담론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분석을 보고하고자 한다. 다문화 또는 이주자에 대한 신문기사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 외국인 차별/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기사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로 양분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인권침해사건은 주요 언론⁷⁾에서 비교적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외국인 차별사건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의 발표로 사회적 관심이 되어왔다. 그에 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 언론이 아닌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헐적인 인상을 준다.⁸⁾ 인터넷 언론과 주요 언론은 한국사회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인터넷 상 유포되는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뒷받침하고 재생산하는 것은 주로 인터넷 언론 보도들인 것으로 관찰된다.⁹⁾

예외적이긴 하지만 주요 언론에 속하는 한 신문기사는 주류 여론은 인종차별 반대라는 통계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이 과장보도된다고 지적한다.¹⁰⁾ 하지만 네티즌들은 다른 의미에서 주요 언론에 의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보도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인용하는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은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언론의 전형적인 “부풀리기 식의 보도”라고 비판한다.

7) 오프라인의 신문을 발행하는 등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언론으로 본 연구는 간주한다.

8) 200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리포트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오원춘 살인사건이 일어난 2012년도에는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일보의 경우,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대한 기사는 2001년에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후 거의 해마다 통계조사에 근거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범죄 급증…살인 등은 ‘빨간불,’” 연합뉴스. 2013. 3. 25. 경수현 기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25145614307> 마지막 검색일 2013. 6. 15.

9) 주 20의 사례 참조.

10) “이자스민 인종차별 공격 1%…차별반대 등 84%,” 한겨레 2012. 4. 19. 임인택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9164.html 마지막 검색일 2013. 6. 17.

이런 식의 부정확하지 못하고 논리비약적인 기사[기] 문제다. 외국인 120만 시대에 결코 보편적이지 않을 이런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국이 마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보편적이고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다. 다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서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정책도 무조건적으로 더욱 다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조장한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대적 경향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친절할 경향이 더 많다. 기사작성을 위한 기사거리를 억지(로 만들). (A)¹¹⁾

인종차별이 한해에 고작 열 건 스무 건 된다고 한국인이 인종차별한다는 건가? 외국인이 한국 땅에서 하루에 평균 90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 몰라요? 한국인이 언제 외국노동자를 향해 테러한 적 있나요? 집단린치 가한 적 있나요? 살던 동네에서 쫓아낸 적 있어요? 그들을 향해 출입금지 외치는 집포가 있었나요? 불체자 추방안하고 외노한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연합>은 자꾸 들쭉서 문제를 일으키나요? (B)¹²⁾

네티즌들은 주요 언론들이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해 계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 한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은 문제이니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식의 기사는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주요 언론과 네티즌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각차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한다. 주요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도가 과장되어있다는 반응은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또는 “서구사회에도 인종차별이 행해진다”라는 발언들로 뒷받침된다. 결국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주요 언론의 인종차별을 문제시하는 기사 내용은 한국사회를 균형있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사회는 인종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배려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라는 발언도 있다. 이런 시각은 ‘다문화’가 사

11) 다음 기사에 대한 댓글. “‘흑인이다’ 손님 내쫓고 ‘냄새난다’ 모욕적 말도,” 한겨레 2011. 7. 26. 유선희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89129.html> 마지막 검색일 2013. 6. 17.

12) “‘인종·출신국 등 차별받았다’…5년 만에 갑질,” 연합뉴스 2011. 7. 26. 한미희 기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726075109234> 마지막 검색일 2014. 6. 28.

실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연계된다.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은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 즉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다문화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터넷 담론의 주요부분은 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논의이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범죄자(불법체류자 포함)’를 이주자의 대표적 이미지로 환기시키는 외국인 범죄자 담론은 이주자에 대한 하나의 인종화(racialization)이며 인종주의 담론이다(Silverstein 2005: 364).¹³⁾ 인터넷 담론 분석의 결과는 여러 인종 및 종족 집단에 대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원리”가 인터넷 담론에서 확인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내부인)’의 이분법적 구도를 이루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즉 이주자에 대한 배척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의해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문화주의는 ‘외국인 우선정책’이라고 몰아간다. 특히 이주자에 대한 배척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함으로써 정당화한다. 격앙된 감정으로 토로되는 이런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위기감과 절박함을 전달한다.

제발 외국인 우선정책 좀 하지마!! 그리고 방송에서도 코리아드림~이라면 서 외노자들 무조건 약자로 표현하던데 미친 짓거리 고만해! 내 꿈도 이루기 힘들데 저런 애들 꿈을 왜 이루게 해줘야 되냐? (C)¹⁴⁾

13) 다음 기사 참조. “나도 흑시 인종차별자?...‘사이버 인종주의’ 갈수록 심각,” 뉴시스. 2011. 6. 5. 배민욱 기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05060106828&cp=newsis>. 마지막 검색일 2013. 6. 17.

14) “체류 외국인 150만 명 첫 돌파... 다문화·다인종화 가속,” 연합뉴스 2013. 6. 1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0095108967> 마지막 검색일 2013. 6. 15.

중동, 동남아, 중국 그중에서도 자기나라에서 부적응자들을 불러다가 가이 드, 단순노동직 이런 거나 시키려고 데려오고 그런 애들이 강간, 살인, 폭행하는 건 손 놓고 있으니 …(D)¹⁵⁾

나 부산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는 러시아, 우즈벡, 베트남, 필리핀 술집 여자들 엄청 많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성병, 범죄 등등을 일으킨다고 부산 시민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갱단, 러시아 마피아 때문에 일부 부산 지역은 내국인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는 실정. 이런 기사는 왜 안 나오고 진짜 자초지종도 모르고 언론에서 떠드는지. 그래서 다문화가 싫다, 외국인 노동자의 살인, 강간, 조직범죄부터 알려. 한심한 언론들 부산 시민 다 죽는다. (E)¹⁶⁾

많은 댓글들에서 나타나는 “외노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준말로서 한국에 있는 동남아 외국인은 ‘노동자’라는 다소 경멸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확산시키고 있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바는 이미 외노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관념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⁷⁾ 대다수 한국인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좋게 말하면 돌보주는 것(patronizing)이고 나쁘게 말하면 깔보거나 아랫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인데, 이런 동남아인들을 비하하는 태도는 외노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호칭에 잘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설동훈 2009: 71-72). 외국인(특히 동남아인)은 곧 노동자라는 등가법칙은 직업과 소득에 따라 사회적 위계가 정해지는 한국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단일하게 낮은 사회적 지위와 계급성을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인종화(racialization)이다. 이 외국인=노동자라는 고정관

15) “싱가포르 vs 일본 이민모델..한국은 어떤 모델,” 매일경제 2013. 6. 17.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cPageIndex=1&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30617172711749> 마지막 검색일 2013. 6. 17.

16) “인종차별,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 ‘외국인이라 에이즈 걸렸을 수도’ 사우나서 귀화 여성 문전박대,” 한국일보 2011. 10. 14. 박우진 기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0/h2011101402372521950.htm> 마지막 검색일 2013. 6. 15.

17) 성공회대 교수로 와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사건을 접수하던 경찰들은 후세인이 ‘노동자’가 아니라 교수라는 것을 잘 믿어 주지 않았다(후세인 2009: 27-28; 정혜실 2010: 97-98 참조).

념은 한국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인 역사적 특수성에서 기인하지만, 낮은 사회적 지위와 인종적 특성을 결부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특수한 인종적 위계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¹⁸⁾

“외노자”에서 계급성을 통해 강조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종적 차이 또는 거리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서로에 대한 배타성을 용이하게 설득한다. 아이디 C는 다문화주의=외국인 우선정책=한국인(내국인) 차별정책의 공식을 전제로 하며, 한국인인 ‘나’의 꿈과 ‘외국인’의 꿈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최소한 정책적 배려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대립되는 구도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E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적 구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외국인’을 범죄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로서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법질서가 위협받는 갈등적 상황을 가시적으로 그려낸다.

한편, 외국인-한국인의 이분법적 구도는 이주자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내세우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의 이분법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란 범주와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게 만든다. 다문화정책적 입장에서 결혼이주 여성은 별개의 범주로 이주노동자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원숙연 2008: 37-39), 이런 맥락속에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묘사도 범법자에 가깝게 그려내고 있다.¹⁹⁾

18) 물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국동포, 즉 ‘조선족’이지만, 이들은 이미 ‘동포’에서 ‘중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재분류되는 과정을 거쳤다(다음 기사 참조. “한국 온지 12년… 여전한 차별 괘시 서러워,” 동아일보 2014. 3. 28. <http://news.donga.com/3/all/20140328/62066790/1> 마지막 검색일 2014. 6. 30). 상기 노컷뉴스 기사(주 3 참조)의 댓글들은 조선족을 중국인 또는 “검은 머리 외노자”라고 지칭하며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포함시킨다. 연구자는 인종이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범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간집단 간의 위계질서를 만들기 위해 고정관념을 동원하여 타자화시키는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본다(Sanjek 1994). 따라서 조선족들도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과 같이 고정관념을 통해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의 대상이다.

19) 다음 아고라 게시판 자유토론방, “정신병자 남편에게 죽은 베트남 신부 사건을 보고,” 2010. 7. 16. 이 게시글에 대한 답글과 댓글 참조. <http://bbs1.agora.media>.

아래 댓글들은 이들 여성의 비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주자들의 내재된 불법성을 성립시킨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들은 외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돈 보고 한국으로 결혼하러 오는 어린 아가씨들도 사실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은 하등 문제가 없지만 돈 보고 시작한 결혼은 문제가 안 생길래야 생길 수 없습니다. 젊은 외국 여자 아내로 맞으려는 늙은 한국 남자들도 개념없지만 몸 팔아서 고향의 가족들한테 돈 보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어린 신부들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돈 보고 결혼해 놓고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고 잘해주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건 모순입니다. (이하 생략) (F)

요즘은 민중 나오면 바로 도망가는 베트남 신부들 정말 많더군요. ... 애를 낳고도 도망간 사례도 있더군요.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 또 엄마를 누구라고 말해줘야 하나 ... 한 남자와 가정을 풍지박산 내는 베트남 여자는 된장녀보다도 더 나빠요. (G)

솔직히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몸 팔다 온 애들도 수도룩 할거다. 필리핀 녀는 애 낳고 도망가서 필리핀 놈이나 주한미군과 동거하는 X들도 수도룩한 걸로 알고 있다. 왜 한국 언론은 이런 건 보도 안 하나? 이게 과연 언론이 언론플레이 하면서 한국 남성만 죽일 놈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한국 언론은 왜 국제결혼 이혼 사유의 대부분을 한국 남성의 폭력이나 학대로 몰아서 모든 책임을 한국 남성에게 뒤집어 씌울까? 왜 한국문화에 적응하려고 안하고, 다달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수십만원씩 보내주지만 바라고, 남편 몰래 한국에 와있는 베트남, 필리핀 젊은 남자들하고 바람난 것들 애기는 왜 보도 안 하나? (H)

주요 언론에서 종종 한국 남편의 폭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묘사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은 남성편향적인 인터넷 담론에서는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 때문에 매매혼이라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에 자발적

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837328 마지막 검색일 2014. 4. 5. 이 게시글에 달린 답글과 댓글에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된 다른 기사의 경우보다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호적인 글도 발견된다.

으로 참여하는 인물이거나, 국제결혼밖에 다른 선택권이 없는 한국 남편들을 이용하다가 버리거나,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인물 또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요 언론에서 주로 가해자로 묘사되었던 한국 남편이 인터넷 담론에서는 피해자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주요 언론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이미지를 외국인 범죄자의 이미지에 수렴시키고, 동시에 여성이라는 젠더범주 대신 남성인 외국인 노동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주자의 불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는 결과를 낳는다.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이미지로부터 외국인 범죄자로서의 이행은 비교적 용이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2) “배타적” 인권 담론의 형성

인종주의적인 다문화 접근 방식은 인권에 대해서도 특수한 접근을 취하게 되는데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닌 배타적 인권으로서 재정의된다. 이런 배타적 인권의 개념은 앞절에서 논의한 인종주의의 확산 또는 정당화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다문화 주창자들이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인권을 호명하는 방식은 인터넷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문화 담론과 이에 대응하는 반대 담론의 공방에서 어찌면 나오는 상관없을 것 같은 “다문화”의 문제를 한국사회에서의 권리의 문제로 상정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다문화주의와 관련해서 호명되는 인권이 국민의 가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표로 쓰이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자연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수정을 가하며, 나아가 한국법 질서가 한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과 감정을 드러낸다고 본다. 네티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권에 대한 의식은 한국법 질서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향적이

나마 법의식을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본다.

인권이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호명되는가는 인권을 호명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화자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드러낸다. 인터넷 상의 반다문화 기류에서 인권에 대한 담론은 상기 논의한 외국인 노동자-한국인의 이분법 속에서 전유되며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연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특정집단을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집단에 대해 해당하는 보편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송영현 2013: 63).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회의적이고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인터넷 담론에서는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과 외국인 범죄자에 의해 침해될 한국인의 인권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인권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인터넷 상의 네티즌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정책담당자들과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제안하는 학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큰 간극이 있다(홍성필 2007; 송영현 2013). 정책입안자들은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의식하여 증기하는 이주자들에게 대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이경숙 2008; 서정민·이병하 2012). 그러나 인터넷 댓글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주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은 종종 정부 또는 사회단체들을 향한 질책의 수단으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2010년 방글라데시 출신의 남성 이주자가 십대 소녀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는 사건 담당 경찰들이 이주자 인권보호단체들의 방해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주자 인권보호의 모순성을 문제 삼는다.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좋고 그들의 ‘인권’[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라 사람들 인권이 먼저 아니냐”며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외국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며 현재의 외국인 관리제도와 ‘다문화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했다.²⁰⁾

이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에 의한 한국인 살해사건을 조사하는 사건에 국한해서 한국정부의 외국인 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경찰 관계자의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권’에 대한 그의 관념이 나타나 있는 첫 부분과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한 그 뒷부분이다. 그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보호가 내국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과 내국인의 인권은 마치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실이 경찰 관계자의 인용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주자의 인권의 내용과 내국인의 인권의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주자의 인권의 내용은 경찰조사에 있어서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데 반해, 내국인의 ‘인권’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 피해로부터 잃을 지도 모르는 목숨이라는 생명권을 의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상의 “단순한 절차상 문제”와 “목숨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보았을 때 무엇이 보다 중요한 것인가는 자명하다는 암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권을 통해 보호해야 할 가치들에도 경중이 있다는 인권으로 불러 일으키는 내용의 차이는 인권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조장한다. 마치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내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왜곡된 관점은 많은 다문화 또는 외국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들이 이용하는 논리를 반영하기도 하고 뒷받침하기도 한다.

20) “화성 17세 소녀 살인, 외국인강력범죄 신호탄?” 뉴데일리 인터넷 뉴스 2010. 12. 17. 전경웅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5630> 마지막 검색일 2013. 6. 15.

기자가 인용한 경찰 관계자가 외국인 관리제도와 다문화정책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기사에서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기자는 경찰 관계자의 직접 인용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관리제도와 다문화정책이 서로 모순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즉 그는 외국인에 의한 한국인 살해사건이라는 하나의 사례로부터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책적인, 제도적인 차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은 (이주자의) 인권보호와 동일한 의미이고, 다문화정책과 이주자 인권보호에 대립되는 것은 외국인 관리제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이 외국인 관리제도의 허술함의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다문화정책은 이주자의 인권보호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정착화 등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의 다문화정책방향은 이주자의 인권보호보다는 선택된 이주자들에게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비판받고 있다(김혜순 2008: 59; 양현아 2013: 305).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인터넷 댓글들은 반다문화 단체 등의 논리를 수용하거나 동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강진구(2012: 5)는 “반다문화 담론이 … 이미지의 단계를 넘어 담론과 이론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통찰한다. 반다문화 진영은 민족의 논리, 자본(경제)의 논리, 종교적 차이 등을 이용해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주자들을 배척하고 내국인을 희생양으로 보이게 만든다(강진구 2012: 13). 이런 논리들은 유명 카페²¹⁾와 개인 또는 동호회의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며 그에 대한 댓글들에서 파편적으로 또는 새로운 조합으로 재생산된다. 의도적인 주장을 펼치는 반다문화 진영으로부터 확산된 의견을 접하는 ‘일반’ 카페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인권의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주장이 그대로 수용된다. 2011년 경기도 안산 지방경찰청이 다문화특구에 국제범죄

21) “I Love Soccer,” “이종격투기,” “엽기 혹은 진실,” “한류열풍 사랑” 등의 방문자가 많은 카페를 포함한다.

수사대를 설립하려고 하자 지역상인들과 외국인관련단체들이 반발한다는 기사²²⁾를 펴온 카페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²³⁾

인권? 남의 나라에 와서 범죄 저지르는 것들한테 인권을 보장해주라고? 자국민 인권이나 지켜주지? (I)

아 난 진짜 저런 인권단체들 이해가 안됨. 뭐 개나 소나 다 인권인가? 당하는 사람 인권도 좀 보장해주라고 —— 사람이어야 권리를 보장해주시. 짐승 같은 것 하는 범죄자들에게 무슨 인권... 저 뻥하면 인권, 인권 드립 하는 단체들 진짜 짜증남 (J)

외국인단체는 정말 그나마 정말 조금조금에 조금이라도 그나마 저러는 거 알겠는데, 인권단체는 도대체 뭐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 우리사람의 인권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님? (K)

아... ○○고... 진심 학교 다니기 너무 무서움... 외국인 노동자 너무 무서워 진심... 학교 교문에서 외국인인가? 아무튼 칼 들고 설쳤다는데 왜 반발해?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L)

아이디 L의 댓글은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칼 들고 설친다는 생생한 장면을 상상하도록 만들며 외국인들에 의한 위해가 급박함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외국인들은 범죄자라는 점을 쉽게 수긍하며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주장한다. 아이디 K의 댓글은 인권단체가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만 치중함에 따라 정작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는 한국민들의 인권은

22) “안산다문화 특구에 ‘국제범죄수사대’ 설치...주민 ‘반발,’” 뉴시스 2011. 6. 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630_0008575761&cID=10803&pID=10800 마지막 검색일 2014. 4. 20.

23) “엽기 혹은 진실”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truepicture/4NBJ/104230?q=%BE%C8%BB%EA%B4%D9%B9%AE%C8%AD%20%C6%AF%B1%B8%BF%A1%20%B1%B9%C1%A6%B9%FC%20%CB%BC%F6%BB%E7%B4%EB%20%BC%B3%4%A1%A1%A6%C1%D6%B9%CE%20%B9%DD%B9%DF> 마지막 검색일 2014. 4. 20.

무시하고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인권단체는 “우리사람”, 즉 한국인의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인권보호에도 순위가 있다는 또는 인권이라는 권리 체계와 행사에도 위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J는 인권을 말하는 것을 ‘드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외국인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립서비스 또는 아무 내용 없는 말장난으로 치부한다. ‘드립’은 말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기보다 특정한 말을 반복하는 입버릇이 화자의 특징으로 굳어져 사회관계에서 어떤 위치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권 드립’을 하는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결여한 채 인권이라는 말을 별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권단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피상적으로 두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권단체들은 별 생각이 없는 주체들로서 매김되며, 이런 인권단체들에 의해 호명되는 인권은 단지 인권단체들의 존립을 위해 서만 필요한 내용 없는 껍데기로 전락한다.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주도적 논리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인 점은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시적인’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필연적으로 내국인 즉 한국민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외국인-한국인의 이분법적 구도가 인권의 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댓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반다문화 담론의 인권 사용은 일반인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잘 맞아떨어지며 보통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나 매체미디어에서의 상품화된 다문화주의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반다문화 담론의 인권의식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적 이해에 맞추어 법을 이해하고 의견을 내놓는 상황을 재현한다(Merry 1990; Coutin 2003). 즉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관계 속에서 법을 해석하고 이용하려 한다. 이분법적 구도의 인권의식은 결국은 외

국인 범죄를 통제하는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법집행과 제도를 요구하는 담론을 생성하고 지지한다. 이런 담론은 현재 한국사회가 외국인 범죄에 의해 치안상태의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내부인과 외부인(“외국인 노동자”)의 경직된 경계를 만들어낸다. 또한 강력한 법제도의 요구는 사실상 법자체의 의미와 내용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른바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시민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강제하고 제한하는 법의 측면을 두드러지게 한다.

3)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불평등

배타적 인권 담론에서 내국인들을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 반다문화 담론 주체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반다문화 담론들은 한국 사회구조에 대해 급진적인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인권침해사례들을 연합뉴스는 “인권위 진정으로 살펴본 국내 반다문화 실태”²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였는데 이 기사에 대한 인터넷상 댓글들은 총 527개였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댓글들의 주를 이루었다. 비판적인 댓글들은 외국인 혐오, 무조건적 다문화 반대,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충동질, 옹호질은 대한민국의 10% 상위 기득권층 500만이지만,

24) 연합뉴스 2011. 7. 26. 한미희, 차지연 기자. <http://media.daum.net/v/20110726080904675> 마지막 검색일 2013. 1. 9.

반대세력은 전체국민의 약 20%, 즉 천만이란 것이다. (M)

다문화란 그저 저개발국가의 값싼 인력을 흡수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급
여를 낮게 묶어두려는 기득권의 자본의 책략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노예수입
의 편리성을 위해 만든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일차적으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다. … 한국의 서민들은 이렇게 자본에
게 당하고도, 피해자는커녕 오히려 인종차별주의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N)

다문화는 외노자 대량으로 들여와 한국인과 저임금 경쟁시키려는 기득권의
망할 정책입니다. … (O)

네티즌들의 담론은 기업과 기업의 논리에 충실한 정부의 외국인 노
동자 유입 정책에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이며 다문화정책에 의해 힘없는 서민과 (한국
인) 근로자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균등한 자원분배의 유
지, 재생산과 그 기제의 정당화가 다문화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며 다문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업과 언론들이 다문화주의를 옹호
하고 선전하는 것이라 파악한다. 반다문화담론의 논리를 분석한 강진구
(2012)는 이런 류의 주장을 “자본의 논리”라고 칭하고 있다. 아یدی N
의 댓글은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자본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비슷한 논조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다른 기사의 댓글들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늠해볼 때, 이미 이 자본의 논리는 ‘일반인’인 네티즌
들의 담론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네티즌들 사이에
서 다문화주의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연계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의견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²⁵⁾
이런 다문화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은 이 기사보다 약 한 달여 전에 발표

25) 여러 기사의 댓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른바 “도배”를 하고 있는 양상도 발견되
나, 획일적인 복제를 떠나서 개별 행위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재
생산되는 측면도 관찰된다.

된 사이버 인종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서도 발견된다.²⁶⁾

일단 한국에선 대기업이 10% 나머지는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한다.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중소기업에 취업인원이 몰려야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먹고살기 힘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받아야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임금도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작심하고 다문화정책을 펴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한 달에 150만원만 받아도 몇 년 일하면 고향가서 떡치고 장구치고 인생된다.
(P)

상기 댓글들의 공통점은 한국사회에서 대기업, 자본가로 대표되는 기득권층과 서민/근로자로 나타나는 집단 간의 이해가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정책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 서민과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정책은 균형성을 잃은 정책으로 아이디 P는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에서의 기존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책임자인 대기업과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현재 빈부 양극화라는 사회현상을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재현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주된 책임자로 보는 사회적 담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댓글들이 함축하는 바는 다문화정책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 강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민들 잡듯이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봐라 (Q)²⁷⁾

26) 주 13 참조.

27) 주 13의 기사에 대한 댓글.

정말 언론들, 인권주의자들 너무한다. 즉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불체자, 외노들의 인권만 있는 건가? (R)²⁸⁾

자국에서조차 외국인한테 역차별 당하고 한국인 복지금 깎아 허울뿐인 다문화 지원금을 늘려주고 자국민이 외국인한테 강간 살해당해도 못 본 체하는 정부와 언론. 자국민은 80만원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외노자 임금은 200이 넘어가고 일자리를 못줘서 안달이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S)²⁹⁾

부익부 빈익빈, 극단적인 양극화현상, 가난의 대물림, 국민 일인당 사천만 원이 넘는 빚, 심화되는 청년실업, 열악한 고용시장, 멕시코 보다 낮은 최저임금, 최저임금 몇 백원 올리기 위해 피눈물 흘려야 하는 나라, 고물가 저임금, 터무니없이 비싼 주택시장, 희망 없고 탈출구 없는 미래 때문에 끊임없이 늘어나는 자살률, 경제파탄으로 가족해체 및 이혼율증가, 형편없는 복지혜택, 남북분단으로 두 동강난 나라, 기타 등등 이런 나라가 한국인데 왜 다문화, 외국노동자 이주를 찬성해야 하는가? 서민말살정책을 세계화란 이유로 기자는 왜 곡보도하지 마시라! (T)³⁰⁾

이 댓글들은 다문화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문화정책의 불균형성, 불공정성을 논의한다. 댓글의 주인들은 명시적, 암묵적으로 한국사회의 서민계층과 동일시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뿐 아니라, 노동, 고용, 외채, 주택 등의 현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상기시킨다. 이런 댓글들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바는 이들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 언론, 대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즉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나 인종주의에 대한 보도에 대한 댓글들의 내용은 다른 사회, 경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보도에 뒤따르는 정부 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내용들과 그다지 동떨어져있지 않다는 점이다.

언론은 다문화정책에서 비롯된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전혀

28) 주 24의 기사에 대한 댓글.

29) 주 13의 기사에 대한 댓글.

30) 주 13의 기사에 대한 댓글.

없지 않은 것으로 비판된다. 이는 언론이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에 대해 언론의 비판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사회구조를 초래하는 데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태도에 대한 각성을 의도했던 신문기사들이 다문화정책 옹호자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도 신문기사들의 계몽적 논조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우리’와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설정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김혜순 2008: 52). 그러나 댓글들은 무능한 언론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한국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 이들 댓글은 다문화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통해 한국사회의 왜곡된 구조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문제를 들고 나온다. 아이디 S의 댓글의 내용처럼 다문화정책은 사회복지 면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민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자원을 빼앗아 간다는 감정적 표현은 한국사회가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할 제도적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에 비판적인 의견들이 왜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반다문화 담론을 가법게 취급해서는 안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강진구 2012; 김휘택 2013). 반다문화 담론이 세력을 얻는 이유에 대해 김휘택(2013: 324)은 정부 및 사회단체들이 정책적으로 이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지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 정책적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늘어간다는 점을 든다. 같은 맥락에서 강진구(2012: 8)는 반다문화 담론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왔던 다문화 논의에 대한 단순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반대담론들이 응축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강진구와 김휘택의 분석은 반다문화 담론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개인의 성향에만 기인한다기보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연관되어 있음을 웅변한다.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 담론의 분석의 결과는 한국사회

에서 반다문화 담론의 내용은 단순한 ‘다문화’의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 문제로 표출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보인다. 송영현(2013: 69)은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골이 깊은 지역, 정책, 이념 갈등들이 다문화주의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경계한다. 다문화주의에 비판적인 의견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인종차별적 태도라기보다 복합적인 문제로서 억눌려왔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주자들의 문제를 통해 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반다문화 담론과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수용하거나 또는 전유하는 네티즌들의 인식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요 언론 기사들이 주로 취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문제시하는 틀에서 벗어나 이들 네티즌들의 반다문화 담론이 내포하는 인종주의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인터넷 상의 성격이 다른 담론들이 서로 조우하여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 관점과 주장을 단순 복사·확산하는 것조차 이제는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어떤 주장들은 파편화될수록 더욱 용이하게 다른 주장들과 접합될 수 있다. 반다문화 담론 주체들은 자신들이 ‘사회비판적 주체’임을 내세우며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다문화정책을 연계시켜 다문화주의의 불공정성을 강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다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주장들은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정부, 대기업, 언론 등의 권력주체들을 거론한다. 따라서 이들의 비판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불균등, 불공정한 자원분배 문제를 논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언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댓글에 편승하거나 선동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주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금지해야 한다든지 또는 다문화주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

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반다문화 담론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적임을 드러낸다. 결국 이들이 되고자 하는 비판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

반다문화 담론으로부터 연구자는 한국사회의 법문화의 한 측면은 네티즌들이 넓은 의미에서 기존 법제도의 정치성을 간파하고 불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유추해 본다. 더 나아가 이들 비판적 주체이고자 하는 자들은 현재의 법질서에 대한 위기감과 불만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법의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의 담론적 재현을 통해 나타나는 법의식은 논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논리들이 결합되는 양상³¹⁾에서 도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서로 다른 논리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인종주의로서 이것이 반다문화 담론의 실질적 원동력이다. 네티즌들의 담론적 재현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법의식은 명확한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 논리가 아니라 잡다한 일상적인 법적 감정과 이기적인 이해관계, 사회계급구조에 대한 불만 등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식은 광의의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다시 법질서의 방향과 내용을 형성하는 근거와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기 논의한 법의식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리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담론적 환경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것일 가능성은 높다(황승흠 2010: 2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범죄, 법제도가 서로 특정한 방식으로 접합되는 지점에서 단편적이거나 법의식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행위자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 제시되는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해독하면서 메시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재협 2010: 368). 앞에서 논의했던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과 결부되는 형태로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1) 반다문화 담론도 표면상 일종의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별개의 주장들의 집합으로서 모순되고 갈등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다문화 담론과 연계해서 네티즌들의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인권과 같은) 법개념의 이해, 그리고 법감정 등을 탐색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법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권리의 일종인 인권에 대한 인지와 현행 인권 행사에 대한 가치 판단과 주체적 의견 형성 등이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특정 분야(외국인 단속 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준법의식 고양도 강조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보다 넓게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문화 담론의 많은 부분은 반다문화 담론이었기 때문에, 반다문화 담론이 한국법질서에 대한 어떤 분위기와 관점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반다문화 담론의 인종주의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반다문화이론은 다문화주의라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인종주의적 담론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반다문화 담론은 단지 다문화주의의 관련 이슈에만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의 많은 공간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우리의 ‘일상’의 부분으로 보여진다.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치는 많은 편향된 존재들 - ‘뜨라이’, ‘일베충’, ‘일부 몰지각한 젊은 엄마들’처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지만 우리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로 인지하게 만든다. 반다문화 담론은 다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왜곡된 관점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특히 반다문화 담론은 사이버 인종주의에 영향을 받는 특수한 법의식을 생산해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다문화주의라는 안전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이라는 의사표시를 넘어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구조에 다문화주의가 연결됐다는 부분적 간파(partial penetration)는 인종주의적 태도와 결부된 법의식을 생산해내고 있다.

즉 반다문화 담론은 ‘외국인’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비판한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 또는 더 나아가 외국인들에게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법질서와 치안력이 부실하다는 주장들을 가시화시키는 축대로 작용한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함과 경찰 치안력의 미비함, 더불어 인권단체들의 훼방 등으로 법질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문화”로 표상되는 존재들에 대해 반감과 두려움을 표시하는 감정에 근거하면서도 그 감정을 증폭시키기도 한다(한진수 2012). 반다문화 담론은 한국 법질서의 존재감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 법질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the state of emergency)를 만들어내고, 경계대상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특수한 맥락에서 인권에 대한 담론에 주목한다. 반다문화 주장에서 나타나는 인권 담론은 매우 편향된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인종주의를 매개하고 강화하는 상징으로 호명되고 있다. 반다문화 담론은 보편적이어야 할 인권개념을 왜곡하여 경중을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물상화시키고 소유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끌어들이어 사용·순환되게 한다. 이런 편향된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반발심을 키우고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차원의 인권 담론을 덮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박영균 2013 참조). 인권과 관련된 법의식 문제는 인권이 본래 의미와는 달리 인종주의 논리의 하나로서 한국인의 역차별 문제로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에 대해,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 ‘인권’과 ‘범죄통제’가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 나타나고, 인권은 모든 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권

리라기보다 특정 집단에게 독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나타난다. 반다문화 담론이 인권을 호명하는 양상은 보편적 인권이 가지는 상징성이 전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터넷 담론을 통해 고찰해본 법의식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법의식에 관려해서 살펴본 이주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여러 담론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이런 이주자들의 한국 거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선동적인 표현을 일삼는 행위 자체는 물론 이런 선동적인 표현들이 넘쳐나는 것을 목격하는 일도 한국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위험한 일이다. 논할 가치도 없는 악플로 치부하기에는 이들이 조성하는 사회유해환경의 여파가 크다. 한국사회의 축적된 여러 갈등과 불만들을 ‘다문화’로 표상되는 이주자 집단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정책이 표방하는 사회통합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주자들의 인격과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진술들은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법제도와 법을 집행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축적되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 담론과 접합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은 숙고되어야할 사항이다. 특히 이른바 “다문화 반대론자”들의 진술에서 엿보이는 “법이 편향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식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법제도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의식은 빈부의 양극화에 따라 법은 가진자의 편이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자조적 풍자와도 접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담론적 재현의 일부분인 인터넷 담론에 대한 조사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실용적 재현에 해당할 현실사회에서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진구

- 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2: 5-34.

김신영 · 신동준

- 2006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 척도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김현철

- 2006 “법의식과 법교육”, 『법교육연구』 1(1): 39-51.

김현희

- 2013 “뉴욕 한인 청과업자의 법의식: 한인·라티노 노사분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6(3): 211-260.

김혜순

-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김휘택

- 2013 “반다문화주의, 정체성, 민족”, 『다문화콘텐츠연구』 15: 305-333.

박창호

- 2013 “인터넷 매개적 상호작용으로서의 댓글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분석”, 『담론 201』 16(2): 135-164.

서정민 · 이병하

- 2012 “한국의 다문화 및 이민관련 정책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립』 34: 53-76.

박영균

2009 “자본의 지구화와 인권 패러다임의 전환”, 『진보평론』 42: 12-41.

송영현

2013 “다문화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법학연구』 24(2): 43-77.

양현아

2013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 실험”, 『저스티스』 134(2): 298-335.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윤은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윤인진 ·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143-192.

이경숙

2008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 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1(2): 189-221.

이선미

2011 “한국인의 이주민 시민권에 대한 인식”, ARI-IOM MRTC 공동 학술회의,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발표문, 25-40.

이재협

2010 “한국의 법률직 TV드라마에 나타난 법의식과 법률가의 이미지: <애드버킷>에서 <검사 프린세스까지>”, 서울대학교 『법학』 51(3): 357-410.

정혜실

- 2010 “한국의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 ‘보노짓 후세인’ 사건과 ‘성인종 차별반대공동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Homo Migrants』 3: 95-109. <http://www.homomigrants.com>

하상복

- 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33: 525-556.

한건수

- 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 113-143.

한경구 · 한건수

- 2007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71-116.

한민

- 2011 “문화진화론적 인종도식의 영향: 한국인들의 인종에 대한 이중적 태도”, 『아세아연구』 54(2): 323-368.

홍성필

- 2007 “국제인권과 결혼이주”, 『저스티스』 96: 27-42.

후세인, 보노짓

- 2009 “한국에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금지법 공청회 자료집, 26-29.

황승흠

- 2010 “한국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법학논총』 22(2): 60-88.

황정미

- 2007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 다문화 한국사회 전망과 도전 발표문, 2-31.

-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Cowan, Dave

- 2004 “Legal Consciousness: Some Observations,” *The Modern Law Review* 67(6): 928-958.

Coutin, Susan Bibler

2003 *Legalizing Moves: Salvadoran Immigrants' Struggle for U.S. Residen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Engel, David

1998 "How Does Law Matter in the Constitution of Legal Consciousness?" in B. Garth and A. Sarat, eds., *How Does Law Matter? Fundamental Issues in Law and Society Research*,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pp. 109-144.

Ewick, Patricia, and Susan S. Silbey

1998 *The Common Place of Law: Stories of Everyda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h, Daniel P. S.

2008 "From Colonial Pluralism to Postcolonial Multiculturalism: Race, State Formation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Malaysia and Singapore," *Sociology Compass* 2(1): 232-252.

Heymann, Josiah McC. and Alan Smart

1999 "States and Illegal Practices: An Overview," in Josiah McC. Heymann, ed., *States and Illegal Practices*, Oxford: Berg. pp. 1-24.

Hirsch, Susan F. and Mindie Lazarus-Black

1994 "Performance and Paradox: Exploring Law's Role in Hegemony and Resistance," in Mindie Lazarus-Black and Susan F. Hirsch, eds., *Contested States: Law, Hegemony and Resistan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 1-31.

Lee, Chulwoo

1998 "Talking about Korean Legal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Legal Culture in Korea," *Korea Journal* 38(3): 45-76.

- Mathew, Biju
 2005 *Taxi!: Cabs and Capitalism in New York City*, New York: The New Press.
- Matsuda, Mary
 1995 “Looking to the Bottom: Critical Legal Studies and Reparations,” in K. Crenshaw, K. Thomas, and G. Peller, eds., *Critical Race Theory: The Key Writings that Formed the Movement*, New York: New Press. pp. 63-79.
- Menjívar, Cecilia
 2006 “Liminal Legality: Salvadoran and Guatemalan Immigrants’ Liv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1(4): 999-1037.
- Merry, Sally Engle
 1990 *Getting Justice and Getting Even: Legal Consciousness among Working-Class Americ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Nelken, David
 2004 “Using the Concept of Legal Culture,” *Australi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9: 1-26.
- Nielson, Laura Beth
 2000 “Situating legal Consciousness,” *Law & Society Review* 34(4): 1055-1090.
- Sanjek, Roger
 1994 “The Enduring Inequalities of Race,” Steven Gregory and Roger Sanjek, eds., *Race*, New York: Rutgers University Press. pp. 1-17.
- Sarat, Austin
 1990 ““... The Law Is All Over” Power, Resistance and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Welfare Poor,” *Yale Journal of Law & the Humanities* 2(2): 343-376.

Silbey, Susan S.

- 2001 “Legal Culture and Legal Consciousnes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Pergamon Press. pp. 8623-8629.
- 2005 “After Legal Consciousnes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 323-368.
- 2010 “Legal Culture and Cultures of Legality,” in John R. Hall, Laura Grindstaff, and Ming-Cheng Lo, eds., *Handbook of Cultural Soci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470-479.

Silverstein, Paul

- 2005 “Immigrant Racialization and the New Savage Slot: Race, Migration and Immigration in the New Europ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4: 363-84.

Yang Kun

- 1989 “Law and Society Studies in Korea: Beyond the Hahm Theses,” *Law and Society Review* 23(5): 891-901.

Yngvesson, Barbara

- 1993 *Virtuous Citizens, Disruptive Subjects: Order and Complaint in a New England Court*, New York: Routledge.

Žižek, Slavoj

-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28-51.

〈Key concept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legal consciousness, racism, human rights

Racism and Legal Culture:

The Legal Consciousness of a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Kim, Hyunhee*

This study investigates an emerging legal consciousness in the transformative era for Korean society being made into a multiracial, multicultural one. The study analyzes diverse online discourses on multiculturalism.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s that many Korean netizens hold a nega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Various migrant groups are viewed as “multicultural,” that is, “not Korean,” and furthermore, they are subject to criminalizing discourses.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on the internet instigate a sense of crisis among people by arguing that foreign criminals are on the increase, and threatening the safety of Koreans and eve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ese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human rights” are also employed in order to criticize multiculturalism whose mission is seen as protecting “foreign workers” rather than legitimate “Korean” citizens. As migrants’ human rights are understood as incompatible with those of Koreans,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negated and reversed. In this regard, human rights are manipulated as a means to justify and consolidate racist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The research analysis means that anti-multiculturalists might share with other Koreans the legal consciousness that reflects deep and extensive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Korean political and legal order.